

민족주의와 이중국적의 불안한 동거*

한도현**

-
- I. 사회적 사실로서의 이중국적 IV. 이중국적의 담론 유형
 - II. 전지구화 시대의 이중국적과 시민권 V. 맺음말
 - III. 이중국적의 한국적 전개
-

I. 사회적 사실로서의 이중국적

우리나라에 이중국적자가 약 25,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 이중국적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양다리 국적, 카멜레온 인생 2만 5천명”¹⁾, ‘부자들의 잔치’라는²⁾ 제목만 보아도 이미 언론들이 이중국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22세까지 국적의 선택을 연기해 주고 있다. 남자들은 18 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

* 이 논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학술대회(2003. 6. 27 ‘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적 정체성’)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한 것이다. 토론해 주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정영훈 교수님과 일반 토론자, 그리고 논문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육고들을 보내주신 성균관대학교 이철우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정신문화연구』 익명의 심사자 세분께도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하나의 시론이기 때문에 귀중한 논평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 제시된 논지와 잘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사회학 전공

1) 정희상, 고제규, 「양다리 국적, 카멜레온 인생 2만 5천명」, 『시사저널』 제666 호(2002. 8. 1).

2) 『한겨레신문』 2002년 8월 9일.

을 선택해야 하며 그 이후엔 병역을 필해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³⁾ 그러므로 이중국적자 대부분은 22세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령층 전체 인구에서 2만 5천명이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치도 아니다.

이중국적이 발생하는 상황은 대개 다음과 같다.

- 1) 선천적 국적 취득에 대한 상이한 법 사이의 충돌에 의해 이중국적이 발생한다. 여기에도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부모양계혈통주의를 택하는 상이한 국가의 국민 사이에 출생하는 것으로, 부의 국적과 모의 국적을 함께 취득하는 예이다. 둘째 속인주의에 의해 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속지주의를 택하는 다른 국가에서 출생하면 양 국적을 함께 보유한다.
- 2) 외국인과 결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결혼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거나 결혼 후 귀화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면서도 원국적을 유지하면 이중국적이 된다.
- 3)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에 귀하면서 원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이중국적이 발생한다.

국내의 이중국적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자녀와 그 부모들의 공직진출 과정에서 언론에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서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된 자녀들과 그 부모의 공직 진출까지도 여론의 심판대에 서기도 한다. 불법행위 여부를 심판하기 보다는 애국심, 이기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 등과 연결시킨다. 미국시민은 이러저러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한국인이 ‘부도덕하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비난이다. 요컨대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이나 그 가족은 “서민들의 분노와 저주의 대상⁴⁾”이 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시민권을 가지면 미국 내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내의 경제활동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한국의 입시지옥을 피해 미국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미국대학에서의 등록금 할인, 면제, 학자금 대출,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정부의 보호대상이 된다⁵⁾. 국내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대학입시에서는 정원외 특례입학의

3) www.korealaw.com/kr/library/file006.htm.

4) 정연주, 「부자들의 잔치」, 『한겨레신문』 2002년 8월 9일

5) 문창재, 「이중국적을 보는 언론의 시각」, 『관훈저널』 제43권 제3호, 178-184쪽, 정의상·고계규, 「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서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자녀를 미국에서 출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미국원정출산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원정출산은 한 해 평균 5000 건 정도라고 한다⁶⁾. 미국시민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한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에서는 면제되니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중 국적자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이중국적자는 반드시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중국적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한국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중국적 문제는 이중국적 전체에서 보자면 부분적인 문제이다. 특히 전지구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경계선이 약화되고 한반도안의 민족주의는 내외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 문제를 병역문제라든가 미국이라는 선망의 땅에서 태어난 ‘일부 부유층’ 또는 ‘지도층’의 양심상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들어 정부가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할 정도로 이중국적을 보는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일으킨 재외동포등록증 제도를 도입하려다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 포기했다⁷⁾. 재외동포등록증을 포기하긴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주동포들의 이중국적 허용요구를 내용면에서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중국적 문제는 공직진출자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화 과정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사실’로 보고 객관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연구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며 이중국적 논의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중국적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개방적, 민주적 시민권(democratic citizenship) 입장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중국적 찬반론을 넘어 전지구화 시대의 시민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양다리 국적, 카멜레온 인생 2만 5천명, 『시사저널』 제666호, 2002. 8. 1

6) 앞의 주.

7) 이철우, 「재외동포법의 헌법제 평가, 『법과 사회』 22호 (2002), 253~278 쪽

자 한다. 이중국적 자체가 국가와 개인의 법적 연결이라는 법학적 문제인데⁸⁾ 이처럼 개방적 시민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의 이중국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추후의 연구를 촉발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서 이러한 전략을 택한다. 지금까지 이중국적이나 시민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과 개방적 시민권을 본격적으로는 다루기는 어렵다. 이 글은 하나의 시론이다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는 하나의 시론으로서 이 글을 쓴다.

II. 전지구화 시대의 이중국적과 시민권

앞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이중국적 문제는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 사이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국적과 시민권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중국적을 논할 때는 시민권과 국적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와 개인의 법적 연결로서의 국적은 그 의미가 비교적 분명한 듯이 보인다. 유럽연합처럼 국민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공동체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국적과 시민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⁹⁾.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 양자는 같은 것은 아니다

필자는 1994년에 미국으로 여행할 때 옆자리의 대만 사람이 입국카드 쓰는 것을 도와 주면서 양자의 불일치 문제를 경험했다. 그 대만인은 입국카드의 시민권(citizenship)이 무슨 뜻이냐고 묻기에 한자로 ‘시민권’이라고 써 주었더니 그 사람은 그 칸에다 ‘타이페이’라고 도시 이름을 써 넣었다. 그래서 거기엔 ‘타이페이’가 아니라 ‘타이완’이라고 써야 한다고 말했더니 끝까지 그 사람은 ‘타이페이’라는 도시 이름을 쓰는 것이 옳다고 했다. 글자가 도시를 뜻하니 그 사람은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다. 시민이라는 한자어가 도시와 연관되어 있고 영어로도 씨티와 관련되어 있지만 시민권은 근대 국민국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서구 역사에서 등장한

8) 이중국적 문제는 국적법과 관련된 법률 영역이지만 이 논문은 법학적 접근을 택하지 않는다. 법학적 접근은 필자의 능력 밖의 것일 뿐 아니라 이중국적을 둘러싼 논의는 법학의 테두리에서만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9) 이철우, 「초국가시대의 국적과 시민권」,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2003. 5. 31.

시민권은 왕과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개념의 표현이다.

이러한 시민권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학문적으로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적에 대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국민의 자격을 말하는 국적은 국민의 구성요건이나 국적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고 사회학자들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사회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시민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국적은 법률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고 시민권은 실질적 권리 측면이 강하다.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다를 수 있다. 사회학자 마샬은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권의 발전을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 등으로의 진화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시민권은 ‘국적에 비해 역동적이며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히터(Heater 1990:63)에 의하면 “시민권은 역사 상 등장 초기부터 법률적·사회적 지위, 정치적 아이덴티티, 충성 의무, 권리 좋은 행동 등과 관련된 의미 덩어리”이다. 즉 단일 차원이 아니라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국적과 시민권을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이중국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욱이 전지구화 시대에 이중국적 문제가 늘어나게 되는 데는 국적과 시민권의 불일치 증대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99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지위에 관한 법령」을 보자. 이 법령은 이중국적 허용을 바라는 미주 동포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특별법은 해외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이중국적자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다. 국적은 미국인이므로 한국내에서 외국인이지만 한국민에 준하는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이중국적과 시민권을 분리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 비한국계 외국인들의 인권운동을 이해하는 데도 편리하다. 한민족 혈통을 지닌 외국인 이른바 재외동포들을 위해 사실상의 이중국적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면 비한국계 외국인들도 ‘동등한 외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인권 운동은 앞으로 이중국적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중국적을 허용해 달라는 미주 동포들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세계화, 외국노동자의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지구화 현상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외국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한국의 이중국적 문제를 논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한국계 외국인들의 인권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globalization from below)라고도 할 수 있다. 자본 주도의 세계화에 대립하여 인간적 측면, 인권적 측면을 강조한 말이다. 이것은 국민국가의 테두리에 머물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시민권 획득 운동이기도 하다. 스튜어트(Stewart 1995)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민권을 민주적 시민권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종래의 시민권은 국가중심적 접근의 산물이며 국민국가의 등장에 따른 공식적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복지사회에서 정부의존적인 복지수혜자, 소비자로서의 시민만을 만들어 내었다. 정부의 호의에 의존하는 시민을 양산해 낸 현대적 시민권 즉 복지권적 시민권은 배타적이며 반동적인 것이라고 규정짓고 그 대안으로서 민주적 시민권, 초국적 시민권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초국적 민주적 시민권을 초국적 인권운동, 초국적 환경운동, 초국적 반부패 운동, 초국적 페미니즘 등에서 찾고 있다. 이 ‘새로운 민주적 시민권’은 국민국가의 테두리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정치공동체는 국민국가의 하위 수준, 초국가적 수준, 도시, 지역, 국제적 지역사회, 연방 등 여러 범위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영토나 혈통에 국한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¹⁰⁾.

국민국가의 테두리에 묶이지 않는 시민권 획득 운동은 단일국적주의를 내용적 측면에서 무너뜨릴 수 있다. 다시 말해 내용적 측면에서 중층적 시민권 또는 이중적 시민권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미국의 평화주의자들이 바그다드에서 인간방패 운동을 벌인다면 그 미국인의 시민권은 이미 이중적이다. 국민국가를 전제로 한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팔크(Falk 1999)는 국민국가적 시민권은 ‘살신성인 하는 충량한 시민을 요구하였으나 초국가 시대의 시민권은 그러한 호소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말한다. 즉 과거의 끈끈한 충성으로부터 얇은 충성관계로(from thick sentiments to thin sentiments) 변화해 간다. 우리 사회에서 이중국적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가 충성심, 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충성심이나 의 약화는 전지구화 시대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팔크(1999)는 이 점을 계층별 집단별 아이덴티티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10) Stewart, Angus. "Two conceptions of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6, No. 1

있다. 그에 의하면 전지구화는 엘리트들의 정치적 아이덴티티의 준거지점을 이동시킨다. 엘리트들은 자신이 태어난 ‘국민국가’를 자신의 아이덴티티 근거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국민국가를 강화하고 시민권의 배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보수적 운동은 민족주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게 된다. 이들은 소비니즘, 반이민 정책, 애국주의 등을 주창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배타적, 차별적 태도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층민들이 이중국적이나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 더 배타적이다. 팔크는 이러한 보수적 우파적 시민권 운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그 대신 경제적 전지구화 즉 자본 주도의 전지구화에 반대하는 진보적 초국적 연대 투쟁에서 희망을 걸고 있다. 이러한 진보적 초국적 연대 투쟁은 주권국가(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며 영토에 기반한 시민권 개념을 약화시킨다.

진보적 초국적 연대 운동을 대안적 지구화 또는 아래로부터의 지구화라고 말한다. 국민국가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는 대안적 지구화는 경제적 지구화에 밀려난 약자들, 비시민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민족주의적(혈통주의적) 관점에 선 이중국적 운동이나 보수적 배타적 시민권 운동과 다르다. 이들은 진보적 의미에서 또 민주적 의미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¹¹⁾ 영주권이 인권운동에 의해 도입될 수도 있고 국민국가의 해외교민 유인책으로 도입될 수 있듯이¹²⁾ 이중국적 자체도 양면성이 있다.

이상으로 전지구화 과정에서 국적과 시민권의 불일치가 증가한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중국적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전지구화 과정에서 이중국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람들의 이동과 관련이 깊다. 같은 민족이라 해도 하나의 주권국가에 모여 살지 않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이산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 디아스포라는 조국과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 어느 하나에만 애정과 충성심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즉 몰입과 충성의 대상이 하나의 국

11) 국적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지위로서 ‘국적을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태도만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본 글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은 거주지 중심 권리 개념인 denizenship과 유사하다. denizenship에 대해서는 최현(2003) 참조

12) 최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정체성과 시민권 제도」,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2003년), 143~173 쪽

민국가가 아닌 다수의 국민국가가 된다¹³⁾.

한민족네트워크나 한상(韓商) 운동에서 보듯이 디아스포라를 국민국가가 공세적으로 결집하려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 논의를 할 때 해외 동포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정부 자체가 세계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서 추진하는 측면도 강하다. 최근에 이중국적을 공세적으로 활용하는 국민국가의 전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¹⁴⁾. 이러한 정책은 국민국가를 지탱하는 단일국적주의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국가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즉 한 주권국가가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를 끌어들이려는 경쟁을 전개한다면 이중국적의 허용으로 나갈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종래의 국민적 애국주의는 얕은 충성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을 사랑하라거나 민족주의를 견지하라고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별로 호소력도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

III. 이중국적의 한국적 전개

이중국적은 이론적으로는 어느 나라 사이에서나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또는 그 가족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이 지닌 이중국적 문제는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동포들과 관련된 이중국적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국적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인의 문제로만 국한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인 즉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은 것은 미국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누리는 ‘혜택 때문일 것

13) Clifford, James. "Diaspora", *Cultural Anthropology* 9(3), 1994, pp. 302-338, In: Roland Robertson and Kathleen E. White, *Globalizat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 III. London: Routledge. 2003 pp. 422~460.

14) 이철우, 「초국가 시대의 국적과 시민권」,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2003년 5월 31일 최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정체성과 시민권 제도」,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2003년 143~173.

이다. 법적 정의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중국적이 위법이라면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인데 언제나 여론과 국민정서의 재판을 받아 왔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들의 행동은 비애국적이고 카멜레온적이다. 언론은 자녀가 미국국적을 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까지도 부모의 애국심, 도덕성에 연결시킨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덕적 정서적 비판은 이중국적 문제 나아가 한국 국적 이탈자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앞으로도 유학, 해외근무 등은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윤리적 수준’을 일일이 가려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순수’ 한국인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애국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원정출산도 특권층 행위가 아니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민, 유학, 해외주재 등의 길을 통해 특혜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싸잡아 비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쉽고 경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인 ‘원정출산’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기적이다. 이타적인 성자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기적 행동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원정출산을 돕는 전문회사, 전문 웹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다.¹⁵⁾ 기존 여행사 가운데 원정출산을 패키지 상품으로 내놓기도 한다.¹⁶⁾

지금까지는 유학, 해외 주재, 이민 등 다소 ‘도덕적’, ‘윤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중국적자가 주로 탄생하였다면 앞으로는 원정출산이라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 주로 탄생할지도 모른다. 다음과 같은 광고까지 등장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는 자국의 영토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모두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의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국적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이른바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국적은 외국의 국제법상 요건을 갖추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우리 국적법과 외국의 국적법상에 규정된 국적취득요건에 따라 출생하면서부터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

15) www.babyepisode.com/left05_01.html.

16) www.birthtour.com/company/company_01.asp.

에 이중국적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고 대다수 국가에서도 이중국적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¹⁷⁾

위 광고문은 미국과 캐나다에 원정출산을 가서 이중국적자를 생산해 내는 방법에 대해 쓰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이중국적자를 생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곳도 있다.¹⁸⁾ 물론 일본을 통해 이중국적자를 만들어 내는 길은 국제결혼이라는 점에서 원정출산은 아니다.

국내의 여행사 외에도 미국 현지 병원들이 원정출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한 병원의 웹사이트에는¹⁹⁾ 9·11 테러 이후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졌다는 자세한 이야기도 실려 있다. 또한 아기 출생 후 미국 시민권, 출생증명서, 여권 신청 등의 서비스를 대행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원정출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다른 아님 미국 시민권자의 혜택이다.

- 1)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외국인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 2) 미국 체류시 별도의 학비 없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
- 3) 대학을 진학시 저렴한 학비 (주립대학의 경우 통상 한 학기에 약 500달러 이내이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으로 수천 -수만 달러 정도씩 지불)
- 4) 다양한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과 학비 전액을 대출
- 5) 각종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 미국의 선진 복지프로그램의 혜택
- 6) 미국내 사회진출과 취업 가능
- 7) 부모는 시민권자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자격
- 8) 남자 아이의 경우 한국 내에 거주하면서도 병역문제 해결

17) www.birthtour.com/information/info_01.asp.

18) http://www.koreaembassyusa.org/han_faq/faq_census.cfm.

19) <http://www.obgyn-la.com/faq.htm>.

미국에서 태어날 아이가 미국시민으로서 누리게 되는 특혜를 설명한 뒤 ‘원정출산에 의한 미국시민권 획득’은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에게 최대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원정출산을 권유하고 있다.

국내 여행사의 원정출산 비용은 약 2300~3000 만원 정도라고 한다²⁰. 9·11 테러 이후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자 괄과 사이판이 원정출산 여행의 목적지로 각광을 받는다고 한다. 이 지역은 단기간 입국의 경우 비자를 면제해 줄 뿐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싸기 때문이다.

어린 이중국적자들은 국내로 들어오면 외국인으로 살거나 이중국적자로 살게 된다. 외국인으로 산다면 비자를 갱신하고 거주신고를 해야 하는 등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 입국 후 국민처우 신고를 하고 한국 내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한다. 국민처우 신고는 이중국적자가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즉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되 국적을 선택할 때까지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서약이다. 국민처우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만 18세까지 번거로운 행정 절차 없이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이러한 이중국적자가 국내에 약 2만 5천명 정도 있다고 한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중국적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 출생 한국인의 문제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중국적이 이들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가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에 흩어진 한민족을 국력 신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이중국적자가 생산될 수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이중국적 허용문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시민인 해외교포들의 계속된 요구가 큰 작용을 하였다. 이중국적 자체가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국인인 재외동포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여 실질적 이중국적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내 언론들은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면서도 해외 동포 특히 미주지역 해외동포들의 이중국적 허용요구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해외의 한국언론들은 이중국적이 한국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점,

20) 정희상·고제규, 「양다리 국적, 카멜레온 인생 2만 5천명, 『시사저널』 제66호(2002.8.1).

해외한인의 능력을 한국의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오랫동안 역설해 왔다. 국내에 있는 이중국적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인 재외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허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

김영삼 정부는 미주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 들여 신고포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이중국적허용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하였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논의는 1995년 12월에 백지화되고 그 대신 재외동포의 재산권 행사 기간 연장, 국내 체류 기간 연장 등 재외동포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²¹⁾.

1998년 법무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법안은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및 금융거래, 의료보험, 연금 및 유공자 보상금 수령 관련 조항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1998년 9월에 수정안인 「재외동포이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이 수정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해외동포등록증을 거소신고증으로 바꾼 것이다. 수정안 이전의 특례법안에서는 해외거주동포에게도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하려했던 것이다. 또 수정안에서는 수정 이전 안이 외국국적 동포에게 일정한 한도에서 공직 취임을 허용하려 했던 것을 삭제하였다²²⁾.

이 특례법은 사실상의 이중국적 허용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재중동포의 대량유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다 조선족의 이중국적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법무부는 1998년 12월에 새로운 수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안은 1999년 8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크게 축소한 것이다. 외국국적 동포 즉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3조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여야 한다고 정하여²³⁾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조선족, 고려인들을 배

21) 김병천,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8 권 (1999.12). 317~358 쪽

22) 앞의 주.

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재외동포를 버리는 기민정책이라고까지 비판하게 되었다.

중국과 독립국연합에서 살아온 재외동포들을 배제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 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6015 호)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체류와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 부여, 경제활동 자유 허용, 의료보험 혜택 부여, 부동산 취득과 이용 허용 등은 내용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한국인의 혈통을 같이하는 중국의 조선족이나 독립국연합의 고려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조선족이나 독립국연합의 고려인들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애국지사들의 후예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을 재외동포 즉 ‘외국국적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기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중국의 조선족과 인권단체들이 이 법의 편파성을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마침내 이들은 이 법을 헌법재판소에 소원하였다. 재판부는 2001년 11월 29일에 이 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²⁴⁾.

정부가 처음부터 중국 조선족이나 독립국 연합의 고려인들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지만 중국과 독립국연합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노력한 결과 절름발이 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중국적 요구는 미주 지역 재외동포들로부터 제기된 것인데 이제 중국과 독립국연합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오랜 산고 끝에 만들어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완전 폐기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외동포 정책을 후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변국들과 외교마찰을 줄이면서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미주 동포만이

23)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24) 이철우,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22호 (2002). 253~278 쪽

아니라 전체 재외동포에게 어떻게 허용하느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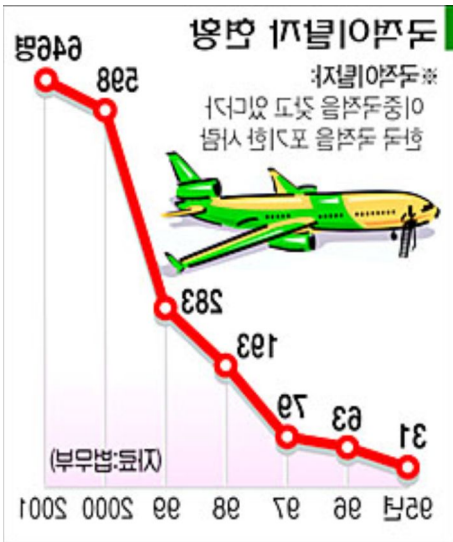
그런데 한국에서 이중국적 문제는 미주지역 재외동포와 기타 지역의 동포의 문제만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동등한 외국인인데 한국인의 혈통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특혜를 준다면 인종차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한국정부와 재외동포 사이의 문제에서 ‘순수’ 외국인과 한국정부의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법 앞의 평등, 법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한국계 외국인에게 미주 지역 재외동포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조만간 한국의 인권단체와 비한국계 외국인들이 힘을 합하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인종차별반대를 내세우며 헌법소원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 이중국적 논의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이중국적 논의는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인과 관련된 좁은 범위에서 미주 지역 재외동포의 전체로까지 확대되고 다시 중국과 독립국연합에 있는 재외동포로까지 확대되었다.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비한국계 외국인들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이중국적 논의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인과 한국계 외국인 사이의 문제가 한국인과 비한국계 외국인 간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국적 논의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자 한국사회의 전지구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IV. 이중국적의 담론 유형

국적은 태어나면서 운명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루소는 가족도 계약이며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계약이라고 말했다. 철저한 계약론자에게 국적이 선택사항이라는 사실이 별로 대수롭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국적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내의 분위기에서 보면 국적은 선택이라는 사실이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중국적을 비난하고 심지어 자녀가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선택한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국적이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선택할 수 없

<표 1> 국적이탈자 추이: 1995- 2001



출처: 『한겨레신문』 2002.7.14

는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전지구화에 따라 사람의 이동이 점차 쉬워진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 특히 노후 보장이 잘 된 나라의 국적을 택할 수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정연주 KBS 사장 등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취임했다. 이들은 이중국적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미국국적이다. 이른바 국적이탈이다. 어감상으로는 이중국적보다 국적이탈이 더 부정적이다. <표 1>을 보면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 신문의 기사제목은 ‘두 얼굴 이중국적 가파른 탈한국’이다.²⁵⁾ 증가추세면에

서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숫자면에서는 그리 큰 수치가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대단히 큰 사회문제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진보적 신문이라고 해서 이중국적에 대해, 국적이탈에 대해 더 개방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새 정부에 와서 진대제 장관이나 정연주 사장처럼 ‘악의작이 아닌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의 비판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변호할 정도이므로 앞으로 국적이탈이나 이중국적은 무조건 정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중국적론이나 국적이탈론에서 상당한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국적론이나 국적 이탈에 대한 논의에서 약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정서라는 이름 아래 민족주의적 단죄가 우세를 떨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이중국적논쟁을 보면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입장도 크게 보면 민족주의 테두리 안에 있다. 이중국적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응은 상반된 방향으로

25) 『한겨레신문』 2002년 7월 14일.

일어난다. 민족을 버리는 이중국적자를 응징하려는 입장이 있고 해외의 디아스포라를 포용하여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지는 개방론이 있다. 이 양자 사이에 신중론이 있다.

어느 방향이든 이중국적은 민족주의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중국적자를 응징하려는 민족주의가 이중국적과 ‘행복한 결혼’을 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법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겨난 이중국적자를 일정 시기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불안한 동거’일 뿐이다. 개방론은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교민 정책처럼 해외동포를 한민족의 발전에 활용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책은 전세계 한민족이 단결할 것을 강조한다²⁶⁾. 이들은 세계 수준의 한민족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이중국적 허용까지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다. 그렇지만 ‘이중국적’이라는 논리는 한민족공동체 결성에 활용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중국적’은 속성상 ‘민족주의’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중국적에 포함된 글로벌리즘 때문에 앞으로 개방적 민족주의는 ‘이중국적’과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방적 민족주의와 이중국적도 ‘불안한 동거’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이중국적에 대한 민족주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가로면은 사고 방식이 자기 중심으로 폐쇄적인지 아니면 자기 바깥의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가로 나누고 세로축은 주변과의 세력관계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하면 네 가지 유형의 대응방식이 나온다.

<표 2> 이중국적에 대한 태도 유형

	개방성	폐쇄적	개방적
적극성			
방어적		I	III
공격적		II	IV

I. 폐쇄적 방어적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적 자민족 중심주의자들이며 한반도 중심의 방어적 민족주의 태도이다. 이들은 이중국적, 국적이탈자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이며 교민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무시한다.²⁷⁾

26) 정영훈, 「한민족공동체라는 그림」, 『종교신문』, 2003. 5. 21.

27) 한국의 전통적인 교민정책은 기민정책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한다. 「방송: 이중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II 폐쇄적 공격적 민족주의: 제국주의적 자민족중심주의를 띤다. 한반도 중심의 세계 한민족주의를 주장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모국 중심의 위계서열 속에 디아스포라를 포섭하고자 한다. 개방적 민족주의에 비해 해외동포들을 비민주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대한다²⁸⁾

III 개방적 방어적 민족주의: 다원적 민족주의의 모습으로 이중국적, 국적이탈의 악의적 이용을 경계하지만 발생의 필연성을 인정한다. 악의적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론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펴지는 않는다.

IV 개방적 공격적 민족주의: 글로벌 민족주의(global nationalism)의 태도이다. 세계화와 민족이산 현실 속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목적은 민족의 역량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해외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폐쇄적 공격적 민족주의에 비해 디아스포라를 대하는 태도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중국적 담론은 I과 II 유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서울올림픽, 구공산권의 몰락, 전지구화 등으로 말미암아 지배적 담론은 III과 IV로 옮겨가고 있다. 지지자의 숫자면에서는 아직도 I과 II유형이 많을지 모르지만 논리적 설득력면에서는 III과 IV 유형이 더 우세하다. 필자는 이 네 가지 유형의 내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유형의 이중국적 담론들이 모두 민족주의적이고²⁹⁾ 국민국가적, 주권국가적 태도라는 점에서 전지구화 또는 세계화라는 사회적 사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살펴보자.

지구촌동포청년연대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거주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 대한민국 거주 외국국적 동포 330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여러 항목 가운데 한국 혈통의 외국인과 비한국계 외국인의 형평성을 묻는 질문이 있다.

28) 해외의 한인들은 국내의 이러한 담론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다. 대표적으로 Koh (2002)를 참조하라.

29) 이것은 한국의 국민 개념이 “정치권력에 의해 늘 혈연적 및 정치적 운명공동체라는 점이 강조되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개인의 집합체 즉 자유로운 공동체라는 발상과 너무나 거리가”(윤건차 2001:244) 멀었던 역사적 사실과 관련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인들의 출입국이나 법적 지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위 설문에 대해 거주국별 찬성률을 보면 일본 89.3%, 독일 79.5%, 미국 67.2%, 한국 61.5%, 중국 5.7% 등이다. 현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독립국연합의 재외동포를 재외 동포에 비해 차별한다고 하여 중국 동포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마침내 헌법 소원하여 이 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하였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의 지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과 외국인 사이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다소 무감각한 편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중국적 문제를 논의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중국적을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 즉 디아스포라와 그 모국간의 관계만으로 보면 조선족 동포들이 보여주는 편협한 사고에 파묻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편협성은 미주 동포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미주동포들은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법이 같은 한민족 가운데 중국이나 독립국 연합의 동포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동포이든, 미주지역 동포이든 자신들만 한국 내에서 특별대우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글로벌리즘에 역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태도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충돌 대신 이중국적 문제를 전향적, 진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이중국적 문제를 보수적 차별적 관점이 아니라 민주적, 포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V. 맺음말

해외여행, 유학, 해외근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법률적으로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해도 ‘사실상의 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항유면에서 보자면 이중국적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 증가추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가야 한다. 서두에서 필자는 ‘이중국적’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고 종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이중국적 문제를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지 말고 객관적 자세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중국적이거나 ‘국적이탈’을 민족주의적 잣대로 매도하는 한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이중국적에 대한 객관적 분석보다는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예가 많았다. 이중국적 문제는 ‘미국시민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병역을 기피하는 압채족을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내에서 보면 이중국적은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문제로 나타나지만 미주 동포들의 주장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이다. 그들은 이른바 ‘부러울 것이 없는 미국 시민’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싶어 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한다. 해외동포들은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기 위해 이중국적을 갖고 싶어 한다. 즉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문제로만 이중국적 문제를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시사토론에서 문화평론가 김갑수씨가 말했듯이 “우리 사회도 경제 덩어리가 커져서 여기서 있는 기득권이 더 큰 수가 있다”³⁰⁾ 열린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중국적을 논의할 때 일부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일부의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중국적에 대한 객관적 논의를 막아버리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중국적문제와 병역문제는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중국적자 가운데 여성은 병역문제와 아무 연관이 없다. 병역의무를 질 수 없는 나이의 이중국적자라면 역시 병역의무와 관련이 없다.

나아가 이중국적 문제를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잣대로만 풀려고 해석하는 안 된다. 그것이 한반도 중심의 민족주의든, 전세계 한민족을 아우르는 민족주의든 민족주의 틀에 머무른다면 이중국적은 닫힌 논리이며 ‘우리만의 잔차 일 뿐이다’ 이것은 세계화에 대한 보수적, 쇼비니즘적 대응이지 개방적인 이중국적론은 아니

30) 『이중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2002년 7월 18일 <http://script.imbc.com/tv/cuent220/scenario0119.html>.

다. 쇼비니즘적 이중국적론 대신 앞으로의 이중국적 논의는 민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념에 의한 차별 금지라는 보편규범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동남아, 라틴아메리카에서 들려오는 비난 즉 ‘어글리 코리아(Ugly Korean)’에 대한 욕살³¹⁾은 그치기는커녕 확산될 것이다. 어글리 코리아인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민족이 되려면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시민권을 고집하는 대신 소수자, 주변인 등을 포괄하는 민주적 시민권 개념을 적극 활용할 해야 할 것이다.³¹⁾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은 이중국적 찬반론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중국적을 둘러싼 담론들을 분석하여 전지구화시대의 시민권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개방적, 민주적 시민권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방적 민주적 시민권은 ‘국가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중국적과 대립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일국적’ 중심의 사고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중국적’ 특히 개방적 이중국적론은 초국적 시민권론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 고에서 추상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경험적 증거로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론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문헌

[방송]

『이중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2002년 7월 18일. <http://script.imbc.com/tv/cucnt220/scenario0119.html>.
 『한국과 이방인』. 2001년 1월 21일 <http://script.imbc.com/tv/cucnt190/scenario0323.html>.

[논저]

고계현, 「이중국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시민과변호사』 통권 104 호
 2002. 9, 19~23 쪽

31) 이것은 열린 민족주의의 모습일 수도 있다. 민족주의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의 긍정적 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 김병천,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8권, 1999. 12. 317~358쪽.
- 도면희, 「한국사 연구와 민족주의」, 한국사회사학회 2002 정기학술대회 『한국사회사연구의 새로운 방향』, 발표문. 2002년 11월 1일.
- 문창재, 「이중국적을 보는 언론의 시각」, 『관훈저널』 제43 권 제8 호, 2002. 가을 178~184 쪽
- 변중수, 「한민족 경제공동체와 미국동포사회」,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한민족네트워크 국제학술 대회』 발표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화연구소, East Rock Institute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인촌 기념관. 2002년 10월 11 일).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7 집 4 호, 2003 년 101~142쪽.
- 이철우, 「초국가 시대의 국적과 시민권」,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2003 년, 5월 31 일
- _____,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2 호, 2002 년 253~278쪽.
- 정연주, 「부자들의 잔치」, 『한겨레신문』 2002 년 8 월 9 일
- 정영훈, 「한민족공동체라는 그림」, 『종교신문』 2003 년 5 월 21 일
- 정희상, 고재규. 「양다리 국적, 카멜레온 인생 2만 5천명」, 『시사저널』 제666호, 2002. 8. 1.
- 제성호, 「이중국적,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과변호사』 통권 104 호, 2002. 9. 14~18 쪽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재외동포법에 관한 재외동포 의식조사 결과분석 1 차 보고서」, 2000.
- 최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정체성과 시민권 제도」, 『한국사회학』 제7 집 4 호, 2003 년. 143~173.
- Clifford, James. "Diaspora", *Cultural Anthropology* 9(3), 1994, pp. 302-338, In: Roland Robertson and Kathleen E. White, *Globalizat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 III. London: Routledge. 2003 pp. 422-460.
- Falk, Richard. "Recasting Citizenship", *Predatory Globalization: A Critique*. Cambridge: Polity Press, 1999, pp. 153-166. In: Roland Robertson and Kathleen E. White, *Globalizat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 III. London: Routledge, 2003, pp. 93-106.
- Heater, Derek.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Longman, 1990.
- Holston, James and Arjun Appadurai. "Cities and Citizenship", *Public Culture* Vol.8, 1996, pp. 187-204. In: Roland Robertson and Kathleen E. White (2003), *Globalizat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 V. London: Routledge, 2003, pp. 286-301.
- Koh, Hesung Chun. "Toward Theorizing the Korean Diaspora and Strategy for Global

Networking”,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Diaspora and Strategies of Global Network, organized by Korea University and East Rock Institute, on October 11, 2002.

Lee, Chulwoo. “Us and Them in Korean Law: The Creation, Accommodation and Exclusion of Outsiders in South Korea”, Arthur Rosett, Lucie Cheng and Margaret Woo, eds. *East Asian Law: Universal Norms and Local Cultures*. London: Routledge Curzon, 2003.

Stevenson, Nick. “Globalization, National Cultures and Cultural Citizenship”, *The Sociological Quarterly* 38(1), 1997, pp: 42~66. In: Roland Robertson and Kathleen E. White, *Globalization: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Vol. III. London: Routledge, 2003, pp. 175~207.

Stewart, Angus. “Two conceptions of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6, No. 1 (March 1995).

● 투고일: 2003. 6. 18

● 심사완료일: 2003. 11. 23

● 주제어(key word): Double Citizenship(이중국적), nationalism(민족주의)